

瑞山市廳 및 邑·面·洞事務所所在地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

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 山 市 長

2. 提出日字：1998. 9. 16

3. 提案理由

- 작은 지방정부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(오산동)을 석남동으로 통폐합 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기관명란의 “오산동사무소”란을 삭제【별표】

5.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자치단체의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·군조례로 정하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

- 서산시 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오산동이 석남동으로 통폐합되는 조례개정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읍·면·동소재지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병행 되어야 하는 안건으로써
-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,
다만, 동간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기존 오산동 동민들이 통합 되는 석남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